

회원가입탈퇴규정

2017. 8.23. 제정

2019.12.12.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른 골프장, 시·도 골프협회, 전국규모 골프연맹체(이하 “회원” 라 한다.), 기타 유관단체의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 은 정관 제5조제4항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2.>
2. “탈퇴” 는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가입신청서류) ①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5. 단체의 정관(규약)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7.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8. 시·군·구 지회 설치 현황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0.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1.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제 4 조(가입요건)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해당 각 호 및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골프장

가) 9홀 이상의 골프코스(골프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골프코스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 시설업으로 설치 운영 요건을 갖추었을 것

2. 시·도 골프협회

가) 해당 시·도를 대표하는 유일의 단체일 것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다) 해당 시·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단체일 것

라) 해당 시·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계 규정에서 정한 가입 요건에 부합되는 단체일 것

마) 20명 이상(초등·중등부 남녀 각 2명, 고등·대학부 남녀 각 3명)의 등록 회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바) 골프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사) 협회의 정관 및 ‘시·도체육회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관(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3. 전국규모 골프연맹

가) 각급별(초등, 중·고등, 대학, 미드 아마추어) 전국 유일의 단체일 것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다) 연맹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단체일 것

라)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가 연 5회 이상일 것

마) 골프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바) 100명 이상의 등록회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사) 협회 정관 및 ‘전국규모 연맹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관(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4. 기타 유관단체

② 제1항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의 납부) ① 골프장 회원은 정관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원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내장객 1인당 18홀-200원, 9홀-100원) <개정

2019.12.12.>

② 신규 골프장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첫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월 내장객 수의 통보기한은 익월 5일까지이며,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6조(심의절차)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제한사항)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해태할 경우 우리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의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협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협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개정 2019.12.12.>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골프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골프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협회 정관(규약), 규정,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골프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골프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협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골프 발전을 저해하는 단체인 경우
5. 회비가 미납된 경우

④ 제명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12.>

⑤ 제4항에 따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신설 2019.12.12.>

⑦ 단체가 해산한 경우 협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2.>

제9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부 칙 <2017. 8.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회와 (구)전국골프연합회의 통합(2016.3.11.)에 따라 가입을 승계 받은 세종특별자치시 골프협회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재심의 한다.

부 칙 <2019.12.1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접수일	<h2 style="margin: 0;">회 원 가 입 신 청 서</h2>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① 단체명			② 연 락 처		
	③ 주소					
	④ 성명(한자)			⑤ 생년월일		
	⑥ 현 주소					
⑦ 설립 연월일						
⑧ 설립목적						
⑨ 회원 및 지회 현황	회원수		지회수			
<p>「대한골프협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대한골프협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며, 동 정관 제7조 및 협회 「회원 가입·탈퇴규정」 에서 정한 권리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p> <p>대한골프협회장 귀하</p>						
<p>[붙임서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 소개서(연혁, 중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3.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4. 단체 정관 5.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6.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현황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사·도 협회 설치 현황 8. 사·군·구 지회 설치 현황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0.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1.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 소개서(연혁, 중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3.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4. 단체 정관 5.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6.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사·도 협회 설치 현황 8. 사·군·구 지회 설치 현황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0.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1.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 소개서(연혁, 중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3.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4. 단체 정관 5.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6.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사·도 협회 설치 현황 8. 사·군·구 지회 설치 현황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0.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1.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별지 제2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

당 골프장은 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 인 명	한글			
골 프 장 명	한글		한자	
	영문			
골프장소재지				
전 화 번 호		FA		
		X		
홈 페이지				
대 표 자 명				
설 립 일 자	년	월	일	개 장 일 자
				년 월 일
총 면 적		m ²	가 입 홀 수	홀 (회원제, 대중)
코 스 명 ① (9홀 기준)	한글		영문	
	코스길이	YRD /		M (B/T기준)
코 스 명 ② (9홀 기준)	한글		영문	
	코스길이	YRD /		M (B/T기준)
코 스 명 ③ (9홀 기준)	한글		영문	
	코스길이	YRD /		M (B/T기준)
코 스 명 ④ (9홀 기준)	한글		영문	
	코스길이	YRD /		M (B/T기준)
회 원 수	법인 (명)	개인 (명)	계 (명)	

년 월 일

골프장명 :

대표자명 : (인)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장 귀하